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9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4.

발 의 자 : 송영길 · 임미애 · 허종식
정일영 · 김남준 · 장종태
민병덕 · 김교홍 · 양부남
김남희 · 서미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대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기존 구급차 차고지의 규모와 출입구 등 시설상 제약으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보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구급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 수급 차질이나 안전성 확인·인증 및 검사 절차의 지연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지형적·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

해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처치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공동부령”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이 조에서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하여야 한다.

1. 구급차의 주된 운행구역에 폭이 좁은 도로, 급경사로, 고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지형적 제약이 있어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을 적용하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급차 차고지의 폭·길이·높이 또는 출입구의 크기 등 시설상 제약이 있어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을 적용한 구급차의 안전한 보관·관리가 어렵고, 그 제약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완화된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구급차에는 완화된 기준 적용에 따른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같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의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입찰공고 또는 계약에 따라 제작·공급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제46조제1항 후단의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마련하기 어렵고 구급차 마련이 지연되면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후단의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 수급 차질 등이 발생하여 구급차 제작·조립이 지연되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인·인증 또는 검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생략) <u><신 설></u>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u>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이 조에서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하여야 한다.</u> 1. <u>구급차의 주된 운행구역에 폭이 좁은 도로, 급경사로, 고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지형적 제약이 있어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을 적용하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u> 2. <u>구급차 차고지의 폭·길이·높이 또는 출입구의 크기 등</u>

<신 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② (생략)

시설상 제약이 있어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을 적용한 구급차의 안전한 보관·관리가 어렵고, 그 제약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완화된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구급차에는 완화된 기준 적용에 따른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④ -----

공동부령-----.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u>제45조제1항</u>, 제46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략) ④·⑤ (생략)	③ ----- ----- ----- ----- ----- ----- ----- ----- ----- ----- -----. 1. ----- ----- ----- ----- -----<u>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u>----- ----- ----- ----- ----- ----- -----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